

	법규적용여부결정서(법규등록부)		표 준 번 호	법규-16	제 정 일 자	2013.08.28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일자(번호)	2018.03.20(1)	쪽 번 호	1 / 4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고압가스 제조허가, 변경허가	법 4 조① 영 3 조 규칙 4 조	고압가스를 제조(용기 충전 포함)하려는 자는 그 제조소마다 관할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table><tr><th>구 분</th><th>허가 대상 규모<개정 2017. 1. 26.></th></tr><tr><td>1. 고압가스 특정제조</td><td>1.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정제시설,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 : 저장능력이 100 톤 이상 2.석유화학공업자의 석유화학공업시설,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 : 저장능력 100 톤 이상 또는 처리능력 1만 ㎡ 이상인 것 3.철강공업자의 철강공업시설,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 처리능력 10만 ㎡ 이상인 것 4.비료생산업자의 비료제조시설,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 저장능력이 100 톤 이상, 처리능력이 10만 ㎡ 이상 5.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것</td></tr><tr><td>2. 고압가스 일반제조</td><td>고압가스 제조로서 상기 고압가스 특정제조 of 범위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td></tr><tr><td>3. 고압가스 충전</td><td>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로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 1 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 또는 제 2 호에 따른 고압가스 일반제조 of 범위 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가연성가스(액화석유가스와 천연가스는 제외한다) 및 독성가스의 충전 나. 가목 외의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와 천연가스 제외)의 충전으로서 1 일 처리능력이 10 ㎡ 이상이고 저장능력이 3 톤 이상인 것</td></tr><tr><td>4. 냉동제조</td><td>1 일의 냉동능력(이하 "냉동능력"이라 한다)이 20 톤 이상(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외의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산업용 및 냉동·냉장용인 경우에는 50 톤 이상, 건축물의 냉·난방용인 경우에는 100 톤 이상)인 설비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는 과정에서 압축 또는 액화의 방법으로 고압가스가 생성되게 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냉동제조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제 1 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 of 허가 를 받은 자 나. 제 2 호에 따른 고압가스 일반제조 of 허가 를 받은 자 다. 도시가스사업 of 허가 를 받은 자</td></tr></table> 다음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table><tr><td>1. 사업소의 위치 변경</td><td>2. 제조·저장 또는 판매하는 고압가스의 종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저장하는 고압가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 제 28 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위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관세법」의 적용을 받는 보세구역에서 고압가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td></tr><tr><td>2의 2. 제조·저장 또는 판매하는 고압가스의 압력 변경</td><td>3. 저장설비의 교체 설치,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의 변경.</td></tr><tr><td>4.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의 변경</td><td>7.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설비 중 압축기·응축기·증발기·수액기의 교체 설치 또는 위치 변경</td></tr><tr><td>8. 상호의 변경</td><td>9. 대표자의 변경</td></tr></table>	구 분	허가 대상 규모<개정 2017. 1. 26.>	1. 고압가스 특정제조	1.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정제시설,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 : 저장능력이 100 톤 이상 2.석유화학공업자의 석유화학공업시설,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 : 저장능력 100 톤 이상 또는 처리능력 1만 ㎡ 이상인 것 3.철강공업자의 철강공업시설,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 처리능력 10만 ㎡ 이상인 것 4.비료생산업자의 비료제조시설,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 저장능력이 100 톤 이상, 처리능력이 10만 ㎡ 이상 5.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것	2. 고압가스 일반제조	고압가스 제조로서 상기 고압가스 특정제조 of 범위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3. 고압가스 충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로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 1 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 또는 제 2 호에 따른 고압가스 일반제조 of 범위 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가연성가스(액화석유가스와 천연가스는 제외한다) 및 독성가스의 충전 나. 가목 외의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와 천연가스 제외)의 충전으로서 1 일 처리능력이 10 ㎡ 이상이고 저장능력이 3 톤 이상인 것	4. 냉동제조	1 일의 냉동능력(이하 "냉동능력"이라 한다)이 20 톤 이상(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외의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산업용 및 냉동·냉장용인 경우에는 50 톤 이상, 건축물의 냉·난방용인 경우에는 100 톤 이상)인 설비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는 과정에서 압축 또는 액화의 방법으로 고압가스가 생성되게 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냉동제조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제 1 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 of 허가 를 받은 자 나. 제 2 호에 따른 고압가스 일반제조 of 허가 를 받은 자 다. 도시가스사업 of 허가 를 받은 자	1. 사업소의 위치 변경	2. 제조·저장 또는 판매하는 고압가스의 종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저장하는 고압가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 제 28 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위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관세법」의 적용을 받는 보세구역에서 고압가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2의 2. 제조·저장 또는 판매하는 고압가스의 압력 변경	3. 저장설비의 교체 설치,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의 변경.	4.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의 변경	7.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설비 중 압축기·응축기·증발기·수액기의 교체 설치 또는 위치 변경	8. 상호의 변경	9. 대표자의 변경	■ 해당 없음 □ 고압가스[제조/저장소설치/판매,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구 분	허가 대상 규모<개정 2017. 1. 26.>																					
1. 고압가스 특정제조	1.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정제시설,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 : 저장능력이 100 톤 이상 2.석유화학공업자의 석유화학공업시설,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 : 저장능력 100 톤 이상 또는 처리능력 1만 ㎡ 이상인 것 3.철강공업자의 철강공업시설,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 처리능력 10만 ㎡ 이상인 것 4.비료생산업자의 비료제조시설,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 저장능력이 100 톤 이상, 처리능력이 10만 ㎡ 이상 5.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것																					
2. 고압가스 일반제조	고압가스 제조로서 상기 고압가스 특정제조 of 범위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3. 고압가스 충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로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 1 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 또는 제 2 호에 따른 고압가스 일반제조 of 범위 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가연성가스(액화석유가스와 천연가스는 제외한다) 및 독성가스의 충전 나. 가목 외의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와 천연가스 제외)의 충전으로서 1 일 처리능력이 10 ㎡ 이상이고 저장능력이 3 톤 이상인 것																					
4. 냉동제조	1 일의 냉동능력(이하 "냉동능력"이라 한다)이 20 톤 이상(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외의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산업용 및 냉동·냉장용인 경우에는 50 톤 이상, 건축물의 냉·난방용인 경우에는 100 톤 이상)인 설비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는 과정에서 압축 또는 액화의 방법으로 고압가스가 생성되게 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냉동제조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제 1 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 of 허가 를 받은 자 나. 제 2 호에 따른 고압가스 일반제조 of 허가 를 받은 자 다. 도시가스사업 of 허가 를 받은 자																					
1. 사업소의 위치 변경	2. 제조·저장 또는 판매하는 고압가스의 종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저장하는 고압가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 제 28 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위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관세법」의 적용을 받는 보세구역에서 고압가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2의 2. 제조·저장 또는 판매하는 고압가스의 압력 변경	3. 저장설비의 교체 설치,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의 변경.																					
4.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의 변경	7.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설비 중 압축기·응축기·증발기·수액기의 교체 설치 또는 위치 변경																					
8. 상호의 변경	9. 대표자의 변경																					

	법규적용여부결정서(법규등록부)			표 준 번 호	법규-16	제 정 일 자	2013.08.28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일자(번호)	2018.03.20(1)	쪽 번 호	2 / 4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고압가스 제조신고, 변경신고	법 4 조② 영 4 조 규칙 4 조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종류 및 규모 이하의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는 관할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table><tr><td>구 분</td><td>신고 대상 규모</td></tr><tr><td>1. 고압가스 충전</td><td>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로 고압가스(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는 제외한다)를 충전하는 것으로서 1 일 처리능력이 10 세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저장능력이 3 톤 미만인 것</td></tr><tr><td>2. 냉동제조</td><td>냉동능력이 3 톤 이상 20 톤 미만(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외의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산업용 및 냉동·냉장용인 경우에는 20 톤 이상 50 톤 미만, 건축물의 냉·난방용인 경우에는 20 톤 이상 100 톤 미만)인 설비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는 과정에서 압축 또는 액화의 방법으로 고압가스가 생성되게 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냉동 제조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제 3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 고압가스 일반제조 또는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받은 자 나.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전문개정 2008. 6. 20.]</td></tr></table>	구 분	신고 대상 규모	1. 고압가스 충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로 고압가스(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는 제외한다)를 충전하는 것으로서 1 일 처리능력이 10 세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저장능력이 3 톤 미만인 것	2. 냉동제조	냉동능력이 3 톤 이상 20 톤 미만(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외의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산업용 및 냉동·냉장용인 경우에는 20 톤 이상 50 톤 미만, 건축물의 냉·난방용인 경우에는 20 톤 이상 100 톤 미만)인 설비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는 과정에서 압축 또는 액화의 방법으로 고압가스가 생성되게 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냉동 제조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제 3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 고압가스 일반제조 또는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받은 자 나.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전문개정 2008. 6. 20.]	■해당 없음 □고압가스 제조(신고서,변경신고서)			
	구 분	신고 대상 규모											
1. 고압가스 충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로 고압가스(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는 제외한다)를 충전하는 것으로서 1 일 처리능력이 10 세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저장능력이 3 톤 미만인 것												
2. 냉동제조	냉동능력이 3 톤 이상 20 톤 미만(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외의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산업용 및 냉동·냉장용인 경우에는 20 톤 이상 50 톤 미만, 건축물의 냉·난방용인 경우에는 20 톤 이상 100 톤 미만)인 설비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는 과정에서 압축 또는 액화의 방법으로 고압가스가 생성되게 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냉동 제조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제 3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 고압가스 일반제조 또는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받은 자 나.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전문개정 2008. 6. 20.]												
	저장소 설치, 고압가스 판매 허가	법 4 조⑤ 규칙 4 조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 고압가스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저장소나 판매소마다 관할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3. 20.>	■해당 없음 □고압가스[제조/저장소설치/판매,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용기 등 등록 변경 등록	법 4 조①	용기·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를 제조하려는 자는 관할관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table><tr><td>구 분</td><td>신고 대상 규모</td></tr><tr><td>1. 용기 제조</td><td>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내용적 3 데시리터 미만의 용기는 제외한다), 그 부속품인 밸브 및 안전밸브를 제조하는 것</td></tr><tr><td>2. 냉동기 제조</td><td>냉동능력이 3 톤 이상인 냉동기를 제조하는 것</td></tr><tr><td>3. 특정설비 제조</td><td>고압가스의 저장탱크(지하 양반동굴식 저장탱크는 제외한다),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관련 설비를 제조하는 것</td></tr></table> 등록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1. 사업소의 위치 변경 2. 제조·저장 또는 판매하는 고압가스의 종류 변경(고압가스의 종류 변경으로 저장능력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저장하는 고압가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 제 28 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 가스안전공사"라 한다)가 위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관세법」의 적용을 받는 보세구역에서 고압가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2의 2. 제조·저장 또는 판매하는 고압가스의 압력 변경 3. 저장설비의 교체 설치,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의 변경. 다만, 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을 저장능력의 증가 없이 교체 설치 또는 설치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의 변경 7.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설비 중 압축기·응축기·증발기·수액기의 교체 설치 또는 위치 변경 8. 상호의 변경 9. 대표자의 변경	구 분	신고 대상 규모	1. 용기 제조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내용적 3 데시리터 미만의 용기는 제외한다), 그 부속품인 밸브 및 안전밸브를 제조하는 것	2. 냉동기 제조	냉동능력이 3 톤 이상인 냉동기를 제조하는 것	3. 특정설비 제조	고압가스의 저장탱크(지하 양반동굴식 저장탱크는 제외한다),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관련 설비를 제조하는 것	■해당 없음 □(용기,냉동기,특정설비)제조 등록 신청서 ■해당 없음 □(용기,냉동기,특정설비)제조 변경등록 신청서	
			구 분	신고 대상 규모									
1. 용기 제조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내용적 3 데시리터 미만의 용기는 제외한다), 그 부속품인 밸브 및 안전밸브를 제조하는 것												
2. 냉동기 제조	냉동능력이 3 톤 이상인 냉동기를 제조하는 것												
3. 특정설비 제조	고압가스의 저장탱크(지하 양반동굴식 저장탱크는 제외한다),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관련 설비를 제조하는 것												

	법규적용여부결정서(법규등록부)			표 준 번 호	법규-16	제 정 일 자	2013.08.28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일자(번호)	2018.03.20(1)	쪽 번 호	3 / 4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사업개시 등의 신고	법 7 조 규칙 11 조	앞장에 따른 허가/신고/등록한 자(이하 " 사업자등 "이라 한다)는 그 사업,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 중단, 폐지하려면 미리 허가/신고/등록 관청에 신고 실시	[(사업,저장소 사용)개시, 중단, 폐지, 재개]신고서	
	공급자 의무	법 10 조	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가 고압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실시 - 수요자에게 위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	공급자 요구사항 준수	
	안전관리규정	법 11 조 규칙 17 조~20	사업자등은 그 사업의 개시나 저장소의 사용 전에 안전관리규정을 관할관서에 제출 이때, 가스안전공사 의견서 첨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시설·용기의 안전유지	법 13 조	사업자등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시설 및 용기등의 제조시설을 제 4 조제 4 항, 제 5 조 제 2 항, 제 5 조의 3 제 2 항 또는 제 5 조의 4 제 2 항에 따른 시설기준 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	시설기준 과 기술기준 준수	
	안전관리자	법 15 조 영 11 조의 2,12 조 13 조,[별표 3]	- 사업자등과 제 20 조제 4 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 는 사업 개시 전이나 특정고압가스의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 를 선임 - 냉,난방용 냉동제조업자 및 특정고압 가스사용 신고자는 안전관리자를 대행 기관에 위탁 가능	고압가스 안전관리절차에 직무 반영 ☐ 자체선임(1명) ☒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	-고압가스 안전관리 절차서 -안전관리자선임 등 보고서 -안전관리대행계약서
	검사 등	법 16 조	사업자등이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 또는 수입 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의 공정별로 허가/신고 관청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법 16 조의 2	사업자등은 정기적, 수시로 관할관서의 수검 실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사용신고 등 (특정고압가스사용자) ①②③사용신고 및 시설경비	법 20 조 영 16 조 규칙 46,47 조	- 다음의 특정고압가스사용자 는 특정고압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실시 -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따라 해당 시설 경비 - 신고대상 특정고압가스 (영 16 조): 수소·산소·액화암모니아·아세틸렌·액화염소·천연가스·압축모노실란·압축디보레인·액화알진·포스핀·셀렌화수소·게르만· 디실란·오불화비소·오불화인·삼불화인·삼불화질소·삼불화붕소·사불화유황·사불화규소 - 신고대상자(규칙 46 조) : 1. 저장능력 250kg 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2. 저장능력 50 ㎥ 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3. 배관으로 특정고압가스(천연가스는 제외한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4. 압축모노실란·압축디보레인·액화알진·포스핀·셀렌화수소·게르만·디실란·오불화비소·오불화인·삼불화인·삼불화질소· 삼불화붕소·사불화유황·사불화규소·액화염소 또는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려는 자. 5. 자동차 연료용으로 특정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6.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를 갖추고 천연가스를 자동차에 충전하려는 자	- 고압가스관리 절차 제정운영 - 관할관서에 신고 실시	고압가스 안전관리 절차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증명서

	법규적용여부결정서(법규등록부)			표 준 번 호	법규-16	제 정 일 자	2013.08.28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일자(번호)	2018.03.20(1)	쪽 번 호	4 / 4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사용신고 등 (특정고압가스사용자) ④⑤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법 20 조 규칙 48 조 [별표 8]	- 완성검사 : 시설 설치/변경공사 완료 후 - 정기검사 : 완성검사 후 매 1년 주기 *검사기관 : 관할 관서 *시설.기술.검사기준 : 규칙[별표 8]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실시	- 완성검사증명서 - 정기검사신청서
	안전교육	법 23 조 규칙 51 조	- 사업자등,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 등은 한 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안전교육 수료	안전교육 수료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기간 등
			가. 전문교육	1)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원(2)의 대상자는 제외한다]	신규 종사 후 6 개월 이내 및 제도변경, 기술발달 등 안전관리의 환경변화로 안전교육의 실시가 필 요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3) 운반책임자	
				4)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나. 특별교육	1) 운반차량운전자	신규 종사 시 1 회
				2) 고압가스사용자동차 운전자	
				3)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원	
			다. 양성교육	1) 일반시설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2) 냉동시설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3) 판매시설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4) 사용시설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5) 운반책임자가 되려는 사람	
	보험가입	법 25 조 영 18 조 규칙 53 조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고압 가스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 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	보험가입	보험가입증명서류
	사고의 통보등	법 26 조 규칙 54 조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그의 시설이나 제품과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 실시 1. 사람이 사망한 사고 2.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3.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사고 4.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누출로 인하 여 인명대피나 공급중단이 발생한 사고	발생시 통보	